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소 상 공 인 생 계 형 적 합 업 종 지 정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권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의 내용 및 세부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에 따른 대기업등의 해당 업종·품목 참여제한 권고 시 그 내용을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나.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
- 다. 공표 이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신설)
- 라.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1억원으로 하되 고의성 여부,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안 제15조 신설, 별표 3)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정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의 합의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권고사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정내용

제10조의3(참여제한 권고 위반에 따른 제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

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권고내용 및 기간
 2. 권고사항 위반 행위를 한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권고사항 위반 내용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할 때에는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권고사항 위반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
 3. 해당 업종·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권고사항 위반 내용
 2. 이행명령 내용
 3. 이행기간
 4. 이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⑤ 그 밖에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15조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 2. 개별기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1억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부 칙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지정신청에 따른 참여 제한 권고)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의 합의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권고사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정내용		
<신 설>		제10조의3(참여제한 권고 위반에 따른 제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권고내용 및 기간
2. 권고사항 위반 행위를 한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권고사항 위반 내용
4.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할 때에는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권고사항 위반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
3. 해당 업종·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권고사항 위반 내용 2. 이행명령 내용 3. 이행기간 4. 이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 그 밖에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1억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연 락 처	(044) 204 - 7934